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17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김대식 · 김용태 · 김예지
안철수 · 김도읍 · 박덕흠
서지영 · 최보운 · 조지연
정성국 · 조정훈 · 이철규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 다.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에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및 제44조의7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44조의3의 제목 “(임의의 임시조치)”를 “(임시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 접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제2호의3 ”으로 한다.

2의3.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
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

-----.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

2. 제44조의7제6항에 따른 기술
적·관리적 조치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3(임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
고 접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긴급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긴급 임
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
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
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
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의2. (생략)

<신설>

3.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
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
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
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
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
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
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호의2, 제
2호의3-----

-----.

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